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가합930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3. 주식회사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4.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5. [redacted]시 [redacted]구

6. E

7. F

변 론 종 결 2021. 3. 18.

판 결 선 고 2021. 4. 27.

주 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1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, [redacted]시 [redacted]구,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.
2. 원고와 피고 C, 주식회사 D, [redacted]시, F 사이에서 소외 G이 2018. 5. 9. 이 법원 2018년 금 제2267호로 공탁한 134,684,185원, 이 법원 2018년 금 제2269호로 공탁한 183,626,894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3. 소송비용 중 각 1/7은 피고 C, 주식회사 D, [redacted]시, F가,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

1)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B'이라 한다)은 2002. 8. 9. 분할 전 [redacted]시 H 전 728㎡ 중 1,392분의 688.5지분(이하 '분할 전 토지'라 한다)[1][2]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,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I조합 등 5개 J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[redacted]등기소 2002. 8. 9. 접수 제89267호로

1) 이하 모든 토지는 같은 리의 토지로,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만 특정한다.
2) 위 H 토지는 2010. 6. 3. H 전 408㎡, K 전 320㎡로, 2017. 10. 12. H 전 160㎡, L 전 248㎡로 각 분할되었고, 2019. 5. 20. '전'에서 '도로'로 지목이 변경되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2)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B의 위 J조합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인데,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2010. 5. 13.경 I조합 등 그 채권자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인 5억 원을 지급하고, 그 무렵 I조합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가등기담보법'이라 한다) 제3, 4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에 기하여 [redacted]법원 [redacted]등기소 2010. 6. 18. 접수 제680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'이 사건 이전등기'라고 한다).

3)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"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가등기담보법 제3, 4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쳐진 본등기이므로 무효이다."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(이 법원 2010가합8256호). 위 법원은 2011. 12. 14.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, 피고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2. 1. 6.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공탁의 경위

1) [redacted]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G은 M공사를 위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L 전 248㎡ 중 1,392분의 688.5 지분을 수용하면서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위 수용보상금을 376,565,810원으로 정하였다(이하 위 수용보상금을 '이 사건 수용보상금'이라 한다).

2) 피고 C의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C이 G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,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,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가 있었고, 위 각 결정 또는 압류통지서가 아래 송달일자란 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재 일자에 G에게 송달되었다.

채권자	사건번호	송달일자	청구금액(원)
주식회사 D	이 법원 2017타채949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	2017. 6. 23.	4,812,838,175
[redacted]시	체납체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	2017. 12. 26.	33,021,780
F	이 법원 2018타채629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	2018. 4. 26.	500,000,000

3)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 C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D(이하 '피고 D'라 한다), [redacted]시, F를 채권자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자, G은 2018. 5. 8. '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, 4호, 민법 제487조 후단,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'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C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등기권리자로 표시된 피고 B을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른바 '혼합공탁' 방식으로 이 법원 공탁관에게 위 수용보상금 합계 318,311,079원을 공탁하였다[이 법원 2018 금 제2267호(이하 '이 사건 제1차 공탁'이라 한다), 같은 법원 2018 금 제2269호(이하 '이 사건 제2차 공탁'이라 하고, 이 사건 제1차 공탁과 합하여 '이 사건 각 공탁'이라 한다)].

다.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배당절차 진행 경과

1) 원고는 [redacted]법원 2006나64131 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, 2018. 9. 27. 이 법원 2018타채14846호로 이 사건 제2차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423,724,894원에 대하여, 2018. 11. 7. 이 법원 2018타채14846호로 이 사건 제1차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427,637,029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령을 받았다(이하 '이 사건 각 추심명령'이라 한다).

2) 이 법원 공탁공무원은 2018. 11. 12. 및 2018. 11. 13.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.

3) 이 법원은 위 공탁 및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(N, O)를 진행하면서 2019. 2. 경 '피고 B 또는 피고 C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확정증명원' 등 이른바 '혼합해소문서'를 제출하여야만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, 위 법원의 2021. 3. 24. 사유신고 불수리로 위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[3)]

가.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하여

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,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(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55405 판결). 그런데 피고 B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채

3)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고, 피고 B, E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무자에 불과하므로, 피고 B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.

나.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, E에 대한 소에 관하여

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,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·제출하여야 하므로, 위와 같은 확인의 소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),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. 그런데 갑 제4,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(이하 [redacted]구'라 한다), E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피고들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(피고 C, D, [redacted]시, F에 대하여)

위 인정사실 제1의 가항에 의하면, 피고 C은 가등기담보법 제3, 4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,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그 소유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20

피고 B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.[4)]

한편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이므로,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C과 집행채권자인 피고 D, [redacted]시, F를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(위 2011다55045 판결 참조).

4. 결 론

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, [redacted]구,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, 피고 C, D, [redacted]시,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4)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위 사유는 배당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원고가 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받을 경우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,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.